

2026년 대한체육회 제4차 계약직 직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

2026년 대한체육회 하반기 계약직 직원 및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에 응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,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께서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기한[2026.9.15.(화) 19:00] 내 반드시 제출(방법: 온라인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증빙자료를 기한 내 미제출하실 경우,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합니다. 또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거나, 증빙자료에 이상이 있을 경우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 ※ 예비합격 차순위자로 면접대상자 변동 가능

1 서류전형 합격자 현황

채용직급	채용분야	구분	지원번호	수험번호
계약직 (휴직자 대체인력)	사무행정 (평창훈련지원부)	합격	22	110022
			34	110034
			52	110052
			60	110060
			75	110075
			90	110090
		예비합격	6	110006
			42	110042
			72	110072
	조리사A (태릉선수촌운영부)	합격	76	120076
	조리사B (선수촌운영부)	지원자 없음		
	간호사 (메디컬센터)	합격	12	130012
			36	130036
			40	130040
			54	130054
			71	130071
		예비합격	7	130007
			38	130038
			77	130077

제출시기	제출서류	제출방법	용도
서류전형 합격 후 [9. 11.(금) ~ 9. 15.(화) 19:00]	[공통사항] • 자격증/면허증 증빙자료: 자격증, 면허증 ※ 입사지원서 자격사항/면허사항에 기재한 자격증/면허증 제출 - 입사지원 자격요건 / 배점지표 / 가점사항 등 ※ 자격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서류만 인정 -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제출 가능(성적표는 인정 불가 - 예시: KBS 한국어능력시험,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성적표 불인정 / 제출 시, 서류전형 점수 재산정: 서류전형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변동 가능) - PC 화면, 모바일 화면 캡처·촬영본,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자료 등 일체 불인정 ※ 지원자격 관련 자격증·면허증 필수 제출: 조리사, 간호사 / 미제출 시, 불합격 처리 • 경력사항 증빙자료: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※ 입사지원서 <u>경력사항에 기재된 근무기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기관장 날인 및 근무기간이 표기되어</u> 있어야 함. - 단, 폐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해 하단의 2가지 자료 제출 가능(2가지 자료 모두 제출 필요) 1) 폐업사실증명 (국세청) 2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• 경험사항 증빙자료 ※ 인정범위: 별첨(입사지원서 경력경험 작성가이드)자료 확인 - 활동사진, 계약서, 이체증 등 일체 불인정	온라인제출 (원본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 업로드) ※ 반드시 개인 민감정보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	지원서 검증
	해당자 • 주민등록초본(청년가점 대상자) • 병적증명서(전체 발급 / 남성지원자에 한함) •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(국가보훈부) • 장애인증명서(시·군·구청) • 중증장애인증명서(한국장애인고용공단)		지원서 검증

제출시기	제출서류		제출방법	용도
서류전형 합격 후 [9. 11.(금) ~ 9. 15.(화) 19:00]	해당자	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• 한부모가족증명서(본인 명의로 발급, 선정일자 명시) 및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(지원자 본인 발급, 지원기간 명시) - "본인"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「한부모가족증명서」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확인 (「한부모가족증명서」 "1. 성명"란에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발급 가능해야 함) 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,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가점부여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필요	온라인제출 (원본 스캔 후 채용홈페이지 업로드) ※ 반드시 개인 민감정보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	
		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	
		• 다문화가족 입증서류 ① 결혼이민자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본인, 본인의 배우자,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-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상세, 前 국적표시), 국적취득 사실증명서(국적 취득 당시의국적법에 의해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, 제적등본제출) ② 결혼이민자로서 귀화를 하지 않은 본인, 본인의 배우자, 본인의 직계비속 중 자녀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 증명서,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		
		• 자립준비청년 입증서류 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,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중 1가지 • 청년 입증서류(주민등록초본)		
		•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사본 또는 의사상자 증명서(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) 중 하나를 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와 함께 제출		

2026. 9. 11.(금)

